

# 건설업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The Lawmaking Announcement of the Revised Construction Business Law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개정하는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입법예고 됐다. 건설관련법의 정비와 건설업계의 구조개편을 위한 이 '건설산업기본법'은 그동안 건설교통부가 수차례에 걸친 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관련 당사자간의 의견조정의 어려움 등으로 미뤄왔던 사안이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건설업법의 개정"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출발하게 되었지만 건설산업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입법과정에서 '건설업'의 정의에 '건축설계'를 포함시켜 물의를 빚기도 했지만 협의과정에서 원만한 해결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설계검열'을 위한 시도가 또 어떻게 변형되어 나타날지는 예의 주시해야할 것이다.

입법예고(안)중 제1조, 제2조, 제24조의 내용과 협회의 건의 내용을 발췌, 게재한다.

(편집자 註)

## 1. 제안이유

건설업에 관한 현행 법체계가 건설업법외에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여러개의 법률에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일반국민이나 건설업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령체계를 보다 단순화하고, 건설시장 개방에 따라 건설업체의 경쟁력강화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하여 현행 건설업법상 건설업면허제도·도급 및 하도급제도·분쟁처리제도 등을 개선하여 건설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토록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2. 주요골자

- 가. 법률의 제목을 「건설업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고, 건설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건설업법 이외에 9개의 법률에 규정하고 있던 시공자격제도를 이 법에 의한 건설업으로 흡수통합하여 건설업에 관한 법체계를 단순화하되 전문성 등으로 소관부처가 계속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관부처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 제2항, 부칙 제2조, 제3조)
- 다. 건설업을 일반건설업, 특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으로 구분하던 것을 특수건설업을 전문건설업과 통합하여 건설업의 구분을 단순화하고, 건설업에 관한 자격제도로써 등록제도를 두어 다른 법에서 등록제로 운영되던 업종은 이 법으로 통합되더라도 등록제로 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 제8조 제1항)
- 라. 건설업면허는 매년1회 실시하던 것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폭력행위·부도발생으로 처벌받은 자는 5년간 건설업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결격사유에 추가함(안 제8조, 제11조 제1항 제4호)
- 마. 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한 도급한도액을 초과하는 공사를 도급받지 못하도록 하던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사

하고, 발주자는 이를 참고하여 건설업자를 선정하도록 함(안 제21조, 제23조)

- 바.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에 건설사업관리업무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축사 등 기술인력을 갖추고 공항·고속철도·발전소·댐·플랜트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위탁받은 경우는 건축사사무소 등록없이도 설계·감리를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6호·제7호, 제24조)
- 사. 건설공사하도급계약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하수급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제2항, 제33조 제1항 제5호)
- 아.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공사에 실제 참여한 십장, 기능공, 장비임대업자 등이 기재된 시공관리대장을 발주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한 경우 시공관리대장에 기재된 자는 건설업면허가 없더라도 대금지급 등에 있어서는 하수급자와 같이 보호함(안 제37조)
- 자. 주요시설물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물의 인·허가권자는 시공자의 시공능력을 심사하여 부적합한 경우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제2항)
- 차. 정부는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공공공사의 발주기관에 중소건설업자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대기업인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 제47조 제2항)
- 카. 건설업자들은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던 것을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
- 타.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건설근로자 공제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당해 공사에 종사하는 건설근로자에 대하여 공제제도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82조)

## 건설산업기본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법은 건설공사의 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도급·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수행에 적정을 기하여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업과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4.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건축 등의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 구조물의 축조 및 해체공사, 산업설비의 조립·설치 및 해체공사, 환경오염방지 및 처리시설의 설계·설치공사, 시설물의 유지·보수공사 등을 말한다.
5. "건설업자"라 함은 이법에 의한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를 말한다.
7. "건설사업관리자"라 함은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추고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에 관하여 자문을 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업무내용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고·등록 등을 하여야 수행할 수 있는 때에는 당

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 등을 한 자이어야 한다.

8.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9.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0.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급인이 제3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을 말한다.

11.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의 도급을 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계약관계에 있어서의 하도급을 주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2.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받은 자를 말한다.

13. "건설기술자"라 함은 건설업분야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자로서 관계법령에서 그 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말한다.

제24조(건설사업관리업무의 위탁) ①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축사·기술사 등 관계법령에 의한 설계 또는 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갖추고 공항·고속철도·발전소·댐·플랜트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경우는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계·감리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

③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발주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시공에 관한 도급계약체결을 위하여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자기 또는 자기와 자본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선정하지 않도록 기피하거나 조언하여야 한다.

### 건설업법 개정과정에서 협회 건의 내용

개 정(안)	협 회 건 의(안)	입 법 예 고(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와 건설공사에 부수되는 조사·설계·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4.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건축 등의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 구조물의 축조 및 해체공사, 산업설비의 조립·설치 및 해체공사, 시설물의 유지·보수공사 등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건설업"이라 함은 <u>건설공사를</u> 수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건설업"이라 함은 <u>건설공사를</u> 수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4. ----- <u>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계·설치공사, 시설물의 유지·보수공사</u> 등을 말한다.
제24조(건설사업관리업무의 위탁) ②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축사·기술사 등 관계법령에 의한 설계 또는 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갖추고 공항·고속철도·발전소·댐·플랜트공사의 <u>설계·감리를 포함한</u>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경우는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u>그</u>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4조(건설사업관리업무의 위탁) ② ----- ----- (삭제) ----- ----- (삭제) -----	제24조(건설사업관리업무의 위탁) ② ----- ----- 공항·고속철도·발전소·댐·플랜트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경우는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계·감리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